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 추가 등〉
■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13871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 추가	2
2.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취소 사유 추가	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이만희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3.
3. 회 부 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 추가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생략)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 ----- -----.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 관리 및 보급 사업	1. (현행과 같음)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u>필요한 기술지원</u> 및 지도 · 자문 사업	2. ----- <u>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u> -----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 · 보급 및 관리 사업	3. ~ 5. (현행과 같음)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 · 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정(3년 단위 재지정)되어 운영 중임.

[식품수출 지원기관 제도 개요]

구분	세부내용
현행 지정기관	○ 한국식품연구원(2016.3. ~ 2026.1.) * 3년 단위 재지정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관운영비 지원 가능 (2025년 예산안: 13억 900만원)
목적	○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
사업	○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사업 ○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자문 사업 ○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 및 관리 사업 ○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3 재구성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영세한 식품기업이 자금 및 역량 부족으로 개별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인증 관련 연구분석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통합하여 수행하고, 이를 식품기업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이에 대해서는, ①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이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은 현행 법령으로도 수행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

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1.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3.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신 설> ⑤ (생략)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④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u>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성실한 업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이를 통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하려는 식품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 **(인증지원 사업)** 수출기업 할랄 식품 등 인증 지원, 국내인증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할랄·비건·코셔 등 인증 획득 희망업체 대상 식품 성분분석 지원
- 해외 할랄 분석 전문기관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 국제 공인 할랄 분석 전문기관(할랄연구실) 구축
-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 교차 인정 확대
- 할랄 등 시제품·완제품 개발 및 할랄 등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공비즈니스 모델 개발

□ **(수출정보 제공)** 할랄 등 해외 식품인증 및 관련 정보조사·제공

- 인증매뉴얼 제작·보급, 할랄식품 등 수출상담실 운영, 할랄식품 등 정보 종합 웹사이트 구축·운영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정보 제공
- 각국의 최신 할랄 인증제도 정보수집 제공
- 국제 할랄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 국내·외 할랄 등 식재료 정보 수집·DB화하여 할랄식품 생산기업에 제공
- 국내 인증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할랄 식품 수출통계 DB구축

□ **(인력양성)** 할랄 등 인증 관련 수준별 교육 기획·운영 및 인력 관리

- 해외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할랄 등 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해외인증등록지원)** 수출업체의 다양한 해외인증 등록지원 확대를 통해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경쟁력 강화